독도영토학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1. 역사적 근거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숙종실록

   -돗토리번 답변서

   -신경준의 강계고, 여지지

   -태정관 지령문

   - 1900년(광무 3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

2. 지리적 근거

   - 동국대지도

   -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 대한민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 울릉군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

3. 국제법적 지위

   -1996년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0해리 EEZ를 선포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1. 역사적 근거

-삼국사기

서기 512년(신라 지증마립간 13년) 6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또는 울릉도)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한다.

-고려사

후삼국시대인 서기 930년 우산국이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고려사》(1451년, 조선 문종 1년 편찬)에 다음과 같이 있다.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백길에게 정위(正位), 토두에게 정조(正朝) 품계를 각각 주었다(「고려사」 권1, 세가 태조 13년 8월 병오일)."

고려 후기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는데(「고려사」 권91, 열전4, 영흥군 환;「고려사절요」 신창 원년 9월), 이 점으로 볼 때 고려 후기에는 적어도 울릉도는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단종 2년)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의〈울진현조〉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한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숙종실록

숙종실록 권30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정황과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받아왔다는 진술 및 '울릉도쟁계'에 대한 기술이 담겨 있다. 조선 뿐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도 안용복의 도일활동을 기록해 두었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무라카미家에서 공개한 것으로 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기착하였을 당시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 상에는 안용복이 조선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며 강원도에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속해있다고 하였다.

'울릉도쟁계' 이후 일본 에도막부는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내리고, 조선정부에 통보하였다. 당시에는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로 칭했기 때문에 이 금지령은 울릉도의 도해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다. 하지만 울릉도를 드나들던 오오야 가문에 소장하고 있던 사료에는 '竹島(울릉도), 松島(독도)'라는 기록이 있는 바, 죽도도해금지령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의 도일활동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사료 상 최초의 영토 분쟁인 '울릉도쟁계'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던 적이 없다.'고 하여 공식적으로 이 두 섬이 조섬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서한을 조선 정부에 전달하였다.

- 돗토리번 답변서

1. 인슈(因州)와 하쿠슈(伯州) (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다케시마(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게 된 것인가?

1. 다케시마(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1.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1.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 신경준의 강계고, 여지지

『강계고』는 조선후기의 학자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1756년(영조 32)에 편찬한 지리서이다. 신경준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연혁에 관해 언급하고, 연혁 말미에는 유

형원의「여지지(輿地志)」의 기사를 인용해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圖志)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松島)인데,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하였다.

위 글을 통해서 일본이 우산도를 송도(松島), 즉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에도시대에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로 불렀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우산도가 독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산도와 울릉도가 우산국에 속한다고 한 것은 두 섬 모두 조선 영토임을 말한 것이다.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sd.d_0007_0010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전국지리지인 여지지(輿地志, 1622~1673)는 증보문헌비고에서도 거론한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까지 실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는 증보문헌비고가 동국문헌비고를 보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만기요람이 편찬될 당시인 19세기 초반(純祖 8년, 1808)까지는 실존했던 지리서이다. 그런데,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 역시 일도설(1島說)에 대한 기록을 배제하고 당시의 지리적 인식에 맞는 이도설(2島說)만을 주기했다. 일본 측에서는 신경준 한 사람이 본래 기록을 개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후대 조선왕조의 기록에 신경준과 같은 소견을 보이는 주기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을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기록 당시의 지리적 인식에 맞는 여지지의 기록만을 채택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록이 증보문헌비고 '울릉도'의 기록이다.

"于山島·鬱陵島在東三百五十里 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 一卽芋山 '續'今爲島郡"

{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 동쪽 3백 50리에 있다. 울()은 울(蔚)이라고도 하고, 우(芋)라고도 하고, 우(羽)라고도 하고, 무(武)라고도 하는데,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芋山)이다. '속' 지금은 울도군(鬱島郡)으로 되었다.}

증보문헌비고 울릉도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록으로 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 두 섬이 증보문헌비고가 편찬될 대한제국 당시(1903~1908년) 울도군(鬱島郡)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우산도는 왜에서 松島라고 한다는 여지지의 기록을 인용함으로써 증보문헌비고 울릉도조가 단순히 이전 기록을 그대로 베껴 쓴 기술내용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지지의 기록 중 당시의 지리적 인식에 들어맞는 부분만 인용을 했기 때문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bchung&logNo=5003368264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태정관 지령문

일본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지적(地籍,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 (日本海內竹島外一嶋地籍編纂方伺)'를 작성,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 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합니다

"메이지 10년 3월 20일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稟議)한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 이는 겐로쿠 5년(1692년)에 조선인이 섬(울릉도)에 들어온 이래 구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이 [문서를] 주고받은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을 [내무성이] 주장한 이상, [내무성의] 품의 취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지령을 내려도 되는지 품의 드립니다. 지령안 품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 1900년(광무 3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

19세기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 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속함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 및 내부(內部: 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 했습니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1906년 4월 29일 의정부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에, 본군(本郡: 울도군) 소속 독도가 먼 바다 100여 리쯤에 있더니, 이달 4일(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道洞浦)로 와서 정박하 였는데, 일본 관리 일행이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고 하고, …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하고 가기에 이에 보고 하오니 형편을 살펴 아시기 바란다고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4. 지리적 근거

- 동국대지도

동해 해역에 울릉도를 그 오른쪽 (동쪽)에 우산도(독도)를 그려 넣었다.

-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에도시대 학자인 나가쿠보세키스이가 만든 지도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지만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고, '고려를 바라보는 것이 운주(이즈모)에서 은주(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은주시청합기」의 문구도 기록되어 있다.

출처 : 독도시사뉴스(http://www.dokdosisanews.co.kr)

- 대한민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방공식별구역(ADIZ)은 군사 안보 목적으로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

을 따라 선을 그은 구역이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인도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이 구역으로 다른 국적의 항공기가 진입하면 반드시 해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KOREA'의 'K'를 따 KADIZ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JAPAN의 'J'를 따 JADIZ로 표기한다.

KADIZ는 한반도 주변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연결해 동서해 연안지대 상공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돼 있는데 JADIZ와 접하고 있다.

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반면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처음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시켰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

- 울릉군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에서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이 의결되고, 동년 4월 7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으로 된 주소 대신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된 주소가 새로 부여되었다가, 2006년 독도리의 지번조정에 따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되었다.

5. 국제법적 지위

-1996년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0해리 EEZ를 선포

영해의 출발선부터 200해리(370.4km)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합니다.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안국은 EEZ에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밑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등

의 권리를 갖습니다. 해수나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수역의 경제적 활용에 대한 권리도 포함합니다. 또한 인공 섬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해양 환경에 대한 과학 조사를 하는 등의 권리도 갖게 됩니다.

다른 나라 어선이 EEZ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연안국에서 12해리(22.2km) 내의 영해가 아닌 EEZ 구간에서는 어떤 나라 배라도 조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킨다면 연안국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00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인접국의 EEZ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EEZ를 선포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육지와 육지 간 거리가 13마일(24k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자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동해상 한일 양국의 EEZ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독도 주변 지역을 중간 수역으로 지정했던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로 부터 제외하였습니다. 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CAPIN 677 제 호 (1946. 1. 29.) :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 의 분리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각서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SCAPIN 1033 제 호 (1946. 6. 22.) :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에 관한 각서

-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 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 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 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 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